

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

: ② IFRS17 및 K-ICS

| 이슈 분석 |

금융제도연구실

요약

IFRS17 도입 이후 초기 2년간은 이슈별로 대응하였으나 2025년부터 계리 가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 K-ICS 제도에서 해지위험액, 기초가정위험액 등 요구자본 산출이 정교화되고 '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'이 마련됨. 회사 자체의 원활한 위험관리를 위해 계약이전, 공동재보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- 2024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됨
 - 해지율, 손해율 등 주요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함
 - K-ICS 해지위험액이 무·저해지환급형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정교화됨
- 2025년에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이 구체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보험산업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
 - 계리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
 -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모형 사용과 계약이전, 공동재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음

1. 계리 가정 관리 체계

- 보험부채를 현재 가정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IFRS17이 2023년 시행된 이후 보험회사가 스스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
 - 2023년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, 무·저해지 보험 및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¹⁾을 제시하고 이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반영함
 - 2024년은 무·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모형,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,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 계리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
 - 감독행정작용으로 「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」을 제시하고 2024년 4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나 손해를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결산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경우 2025년 1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음

1)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3. 5. 31), "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"

- 보험회사 재무정보에서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등 실질적 공시 내역 확대가 2024년 결산부터 적용되어 보험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함
 - 재무정보 요약, 회계모형 및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, 계리적 가정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, 보험계약마진 상각, 손해를 및 사업비율,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에 대한 민감도 등이 공시될 예정임
 - 건전성회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와 건전성회계 간 차이, 민감도 정보 등이 공시되어 공시 내역이 확대될 예정임
-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수행하는 계리법인 및 회계법인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외부검증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일반회계는 '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함²⁾
 - 감독회계 및 건전성회계에서 각각 보험업법³⁾ 및 보험업감독규정⁴⁾에 따라 외부검증을 수행하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책임성이 높지 않고 선임계리사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이 맞지 않음
 - 책임준비금 내부검증을 수행하는 선임계리사는 업무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이 있음⁵⁾
- IFRS17 도입 이후 2년간은 이슈별로 대응하였으나 보험회사별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
 -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회사별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니터링·관리·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2. 자본 관리

- K-ICS 제도에서 무·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위험액 산출기준, 기초가정위험액 산출기준 정교화와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단축 등이 2024년 말부터 적용됨
-
- 2) 제39조(벌칙) ① 「상법」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3) 제120조의 2(제120조의2(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))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.
 - 4) 제6-8조(업무보고서의 제출)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사업 연도 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③ 감독원장은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5) 제20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8.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

- 해지위험액은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위험액 중 큰 값을 적용하는데, 대량해지위험액을 표준형 상품과 저해지환 급형 상품으로 구분하여 산출함
 - 2023년은 옵션행사위험액에 대해 표준형 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2024년에 대량 해지위험액까지 확대하여 적용함
 - 기초가정위험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예실차 익스포저 산출기준을 개선하고, 사업비 예실차가 일정 한도 (5%)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험액이 부과되도록 개선됨
 - 기초가정위험액은 기초가정의 낙관적 사용에 다른 손실금액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급금과 사업비에 대한 예실차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함
 - 지급여력제도·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결산 종료 후 2개월, 연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로 현재보다 1개월 단축함
 - 현재는 경과조치로 인해 분기결산 종료 후 3개월, 연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고였으나 타 권역과 결과 비교 등의 이슈로 인해 경과조치를 조기에 종료함
 - 회계법인의 지급여력비율 검증보고서에 검증결과뿐만 아니라 주석도 기재하도록 하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
- K-ICS 비율 관리에 활용되도록 '생명·장기손해보험위험'에 대한 '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'이 우선적으로 마련 되었으며 2025년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면 2026년부터 사용이 가능함⁶⁾
- K-ICS 요구자본은 ① 생명·장기손해보험위험, ② 일반손해보험위험, ③ 시장위험, ④ 신용위험, ⑤ 운영위험으로 구성되며 이 중 비중이 높은 '생명·장기손해보험위험'에 대한 매뉴얼이 우선적으로 마련됨
 - 2025년 상반기에는 '내부모형 예비신청서' 제출 및 준비사항과 일정을 확인하고, 2025년 하반기 이후 '내부모형 승인신청서'를 제출하여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이 이루어지면 2026년부터 내부모형 사용이 가능함
-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이전, 공동재보험 등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계약이전은 이전단위에 대한 규제 검토, Run-off 포트폴리오⁷⁾를 이전하는 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
 -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, 자산유보형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

6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4. 11. 6), "K-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및 홈페이지 게시"

7) Run-off 포트폴리오는 계약인수 및 갱신은 중단하였지만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함